

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

수신자 전 회원사

(참조)

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

1. 전세연 제2021-49호(2021.03.31.)과 관련입니다.

2.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아래와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,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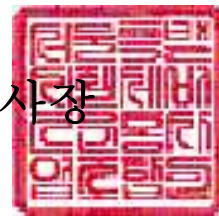
= 아 래 =

시행일	주요 내용
2021.9.24	-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 ▶ 위반시 :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(제27조의2제3항, 제91조제1호 신설)
	- 구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10일 이내의 휴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 반납의무 면제(제89조제2항 신설 등)

※ 불임 : 전자관보 사본 1부.

※ 불임자료는 조합홈페이지(www.tourbus.or.kr)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 [끝]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



과 장 박영수 부 장 라영석 실 장 박호동 전무이사 박태환

협조자

시행 서전버조 21- 83호 (2021.04.01) 접수 ()
우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(교통회관 11층) / <http://www.tourbus.or.kr>
전화 02-422-0019 전송 02-418-0071 / / 공개

"안전띠는 생명띠 정지선은 생명선"